

<p>등학교는 1968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사전 도시계획상 학교로서 시설결정을 받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으나,</p> <p>○현재 학교가 현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황에 맞도록 시에서 제출한 결정안대로 학교시설을 결정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※중·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학교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각각 24%, 71%가 초과되고 있음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	
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465 954 533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6</td></tr> </table>	의안 번호	66
의안 번호	66		
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831 435 898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0</td></tr> </table>	의안 번호	60	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
의안 번호	60		
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연녹지지역(고덕동 215-1)→일반주거지역 603.1㎡ · 일반주거지역(고덕동 213, 213-1)→자연녹지지역 603.1㎡ ·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주거지역, 공원 · 주민의견 청취 결과 : 없음 	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용도지역 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69,9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69,9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 69,900㎡에 대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강남구에 논현생활권 중심지로 결정하여 본 지역을 중심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</p> <p>○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생활권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지구지정은 타당한 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		
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강동구 고덕동 213-1에 연대하여 있는 고덕 제1근린공원 안에 있는 기존 교회를 공원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근린공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,</p> <p>○공원 안에 있는 교회 이적지인 고덕동 213, 213-1의 일반주거지역(603.1㎡)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, 교회가 이전할 현재의 자연녹지 고덕동 215-1(603.1㎡)을 면적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본 변경결정안은 근린공원 관리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 및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	
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1518 954 1585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70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강남구 삼성동 74 일대</p> <p>○내용</p>	의안 번호	70
의안 번호	70		